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68
----------	-----

2023. 10. 13.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9. 27. 강남구청장(환경과)

나. 상정의결

-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3. 10. 13.)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최근 더욱 심화된 기후변화로 인하여 에너지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폭염·폭염에 따른 질환 및 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복지를 통해 에너지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 (안 제4조)

나. 구의 책무 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

다. 종전의 제11조의 근거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 폐지되어 대체법률인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으로 개정함 (안 제11조)

라. 세제·재정지원 등의 조항을 신설함(안 제26조)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지 제1호] 참고

-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제27조
- (3)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3조(정의)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3. 8. 25. ~ 23. 09.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시 특기할 사항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문성)

1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에너지취약계층을 정의규정에 포함하고 강남구의 모든 구민에 대한 에너지 복지 실현 책무 근거를 명문화하며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출되었음.

2 세부내역 검토

가. 에너지 취약계층 정의 규정 신설(안제4조제15호)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의) 1. ~ 14. (생략) 〈신 설〉	제4조(정의) 1. ~ 14. (현행과 같음) 15. “에너지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 집행부는 에너지취약계층을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3조1)를 감안하여 정의 규정에 담은 것으로 사료됨.
- 실질적인 측면에서 ‘에너지취약계층’은 그 발생 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바,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취약계층’을 대신하여 ‘에너지빈곤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감당할 경제적 수준이 안되는 가구’로 정의내리고 있음.
- 통상 학술상으로 ‘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② 평균 연료비 지출이 적정 소비 수준의 중위값을 넘는 가구’를 에너지빈곤층으로 정의내리고 있는 바, 차상위계층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담고 있는 에너지취약계층의 정의내용은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됨.

나. 에너지 복지 실현 책무(안 제5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구의 책무) ① ~ ④ (생략) 〈신설〉	제5조(구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구는 에너지취약계층 등 모든 구민에게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하는 에너지복지(이하 ‘에너지복지’라 한다)를 실현하여야 한다.</u>

- 조례안은 모든 구민에게 에너지복지를 실현해야 할 책무가 구(區)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같은 조례 제8조에는 구민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나, 집행부의 에너지복지 실천을 위한 구체적·실천적·절차적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번 신설되는 개정 내용은 주의적 성격에 그친다고 사료됨.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조례」 제8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3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에너지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② 구민은 구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및 재정 지원(안 제2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6조(세제·재정지원 등) ① (생략) <u><신설></u>	제26조(세제·재정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구청장은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하여 에너지 시설 효율 개선, 에너지 시설 보급 등 에너지복지의 실현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u>

- 개정안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① 에너지 시설 효율 개선, ② 에너지 시설 보급 등 ③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검토하건데, 한국에너지공단이 2015년 밝힌 자료²⁾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저렴한 연탄과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특징을 가지며, 특히 저소득 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 비용을 소비하는 이유가 에너지 성능이 떨어지는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 실제로 노인, 아동, 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에 속하는 바, 적극적인 연료비 지원이나 에너지 비용 할인 등의 사업을 통해 (실질적 개념의) 에너지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집행부의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요망된다고 사료됨.
- 에너지 취약계층을 이해할 때 주목해야 할 점은 계절적 요인 및 취약인구 집단의 건강과 에너지 사용의 긴밀한 관계라고 하겠음.³⁾
 - － 질환자, 노인, 아동, 장애인은 실내 체류 시간이 길고 건강에 대한 온도의 영향이 큰 바, 에너지 비용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효율적 주거의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빈곤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2015.5.22.

3) 이현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에너지 빈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너지 빈곤의 정의와 측정, 보건복지포럼, 2019.7

- 금번 개정안의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질적 개념의) 에너지 취약계층의 감소를 위해서는 주택 에너지 효율성 증대 정책이 병행될 때 가장 비용 효과적이며, 그로 인해 온실 가스 감축 등 순사회편익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집행부 차원의 세심한 집행계획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3 결론

- 한국에너지 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은 감소한 반면에 저소득 가구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함.
- 이는 저효율 주택이 에너지 빈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지원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것인 바, 에너지 정책은 빈곤정책 그리고 주거정책 등 다양한 정책과 혼합되어서 강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여러 부서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결론적으로 금번 개정안은 그 취지와 함의를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는 상위법인 「에너지법」⁴⁾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천적 방안⁵⁾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관련 사항을 에너지 수급 구조 실현을 주목적으로 하는 현행 조례에 담기에는 ‘법과 조례 간의 체계성’ 측면에서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하겠음.

4) 「에너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에너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실현’을 선언적 내용이 아닌 실천적 규범으로서 담보하고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된 조례 방식 채택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 있다고 보임.
- ※ 「경상남도 에너지 복지 조례」와 같은 별도의 독립된 조례로서 에너지복지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8
----------	-----

제출연월일: 2023. 9. 27.

제출자: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환경과

1. 제안이유

최근 더욱 심화된 기후변화로 인하여 에너지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폭한·폭염에 따른 질환 및 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복지를 통해 에너지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 (안 제4조)

나. 구의 책무 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

다. 종전의 제11조의 근거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어 대체법률인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으로 개정함(안 제11조)

라. 세제·재정지원 등의 조항을 신설함(안 제2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지 제1호] 참고

-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제27조
- (3)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3조(정의)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3. 8. 25. ~ 23. 09.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에너지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구는 에너지취약계층 등 모든 구민에게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하는 에너지복지(이하 “에너지복지”라 한다)를 실현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26조, 제27조”로 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하여 에너지 시설 효율 개선, 에너지 시설 보급 등 에너지복지의 실현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의) 1. ~ 14. (생략) <u><신 설></u>	제4조(정의) 1. ~ 14. (현행과 같음) <u>15. “에너지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u>
제5조(구의 책무)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5조(구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구는 에너지취약계층 등 모든 구민에게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하는 에너지복지(이하 ‘에너지복지’라 한다)를 실현하여야 한다.</u>
제11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① (생략) ② 합리화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계획 2. 3. (생략)	제11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26조, 제27조----- ----- 2. 3. (현행과 같음)
제26조(세제 · 재정지원 등) ①	제26조(세제 · 재정지원 등) ①

[별지 제1호]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①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2.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3. 에너지 자립 목표
4.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 국내 여건 및 각국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⑤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 교통·수송, 가정·상업 등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⑥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별로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관리업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등의 이력, 기술 수준, 국제경쟁력, 국가목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⑦ 관리업체는 제6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⑧ 정부는 제7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적에 대하여 등록부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⑨ 정부는 관리업체의 준수실적이 제6항에 따른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⑩ 관리업체는 제9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⑪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6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고 제9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

· 세제 · 경영 · 기술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⑫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부의 관리, 관리업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2)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매년 이행실적을 정부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실적에 대하여 등록부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공공기관등의 이행실적이 제1항에 따른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등은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헌법기관등”이라 한다)는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매년 자발적으로

설정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정부에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통보받은 실적에 대하여 등록부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공공기관등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세제·경영·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정보의 제공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할 수 있으며, 헌법기관등이 제5항에 따른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기술 지원,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제2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및 이행실적의 제출·공개, 제3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관리,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이행, 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실적의 통보·공개 및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간 내에 달성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관리업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관리업체 및 관리업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이하 이 조에서 “예비관리업체”라 한다)에 최근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리업체 및 예비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제출받은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업체에 대하여 명세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명세서를 바탕으로 등록부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 여부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그 공개로 인하여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수 있는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관리업체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비공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리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정부는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 계획을 작성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⑦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제6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세제·경영·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정보의 제공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지정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제3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및 명세서의 제출·수정·보완, 제4항에 따른 등록부의 관리, 정보 공개의 범위·방법, 비공개 요청의 방법, 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비공개 여부의 결정,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3조(정의)

- ⑦ "에너지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에너지 시설 효율 개선, 에너지 시설 보급 등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시 발생하는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5조(구의책무) 제5항

- ⑤ 구는 에너지취약계층 등 모든 구민에게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하는 에너지복지(이하 ‘에너지복지’라 한다)를 실현하여야 한다.

제26조(세제·재정지원 등) 제2항

- ② 구청장은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하여 에너지 시설 효율 개선, 에너지 시설 보급 등 에너지복지의 실현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4. 작성자

- 환경과 공업9급 최영은(02-3423-6232)